신청방법 ⦁우편, 전자(홈택스), 방문접수(세무서 민원봉사실, 지방청 법인세과) \* 홈택스경로 : 신청/제출 > 일반 신청/제출> 일반세무서류신청 > 민원명 찾기에 ‘컨설팅’ 입력 후 조회하기 > ‘법인세 공제･감면 컨설팅 신청’ 신청대상 ⦁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신청범위 ⦁고용･설비투자 등 공제･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･감면의 적용 여부,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 (조특법 §10에 따른 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제외) 신청기한 ⦁세액공제･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⦁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･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제출 서류 신청서 ⦁법인세 공제･감면 컨설팅 신청서 첨부서류 ⦁특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의사결정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